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 | | | |
|-----|------|-----|--|
| 헌 법 | 응시번호 | 성 명 | |
|-----|------|-----|--|

〈제 1 문〉

국회는 담배소비세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감소되지 않자, 2015. 6. 2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등으로 하여금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을 인쇄하여 표기하도록 개정하였다. 위 조항의 시행일은 2016. 12. 23.부터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인 甲과 담배 소매업자인 乙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6. 30. 대리인을 선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5. 10. 7.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다. 흡연자인 丙은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조례가 지하철역 인근에서의 음주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흡연을 금지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甲이 제한받는 기본권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2. 甲과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15점)
3. 위 서울특별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4. 위 서울특별시 조례가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참조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호~제5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제1호~제5호 생략)

6.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가상의 것임

제 2 문

〈제2문의 1〉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국회는 「신상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 추가하고, 나아가 부칙 제2조는 위 조항을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甲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검사는 甲의 형집행 종료일 1개월 전에 「신상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청구하였다.

甲은 「신상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30점)

【참조조문】

「신상정보공개법」

제5조(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호~제7호 생략)

8.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청구는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위 「신상정보공개법」 및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의 것임

〈제2문의 2〉

국회는 국회의원인 甲이 평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특히 2015년 정기회에서 다른 국회의원을 모욕하였다는 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甲을 제명하였다.

국회의 위 제명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

